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질병데이터 분석·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1개 과는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여 평가대상 정원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고, 질병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밑에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3개 과 중 2개 과 및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만성질환관리국 1개 과의 정원 7명 중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

명(9급 2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출·보안업무 및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등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기대응분석관 밑에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 위기분석담당관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및 위기대응연구담당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을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으로,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를 “등 질병 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질병관리정책 연구개발의 기획 · 조정 및 성과관리
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
4. 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5. 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
6. 감염병 등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
7. 감염병 등 대응 기술 융합 · 개발

제5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분석담당관”을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으로,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9호, 제12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호) 중 “감염병”을 “감염병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7호) 중 “위기”를 “등 위험”으로, “보급”을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분석기반 구축
7.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및 관리
8. 감염병 데이터 개방·활용 조정 및 심의
2. 역학 데이터 기반 분석·연구 및 근거 생산
3.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역학조사 서식 표준화 및 개선
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6.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11. 감염병 등 위험평가 및 관련 연구·지원 및 협력

제5조제4항제10호(중전의 제12호) 중 “감염병”을 “감염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을 “질병관리역

량개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감염병”을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4. 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교육
5.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연구
7.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개발
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6.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질병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 지원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주관에 속하지 않는 감염병 등 역학조사 제6조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로,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염병정책총괄과·감염병관리과·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결핵정책과”를 “감염병정책과·감염병관리과·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결핵정책과”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을 각각 “감염병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염병위기대응국)”을 “(감염병위기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감염병위기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위기대응국에 위기대응총괄과·검역정책과·의료대응지원과·비축물자관리과”를 “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검역정책과·의료대응지원과·비축물자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대응총괄과장”을 각각 “위기관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기 시 대응”을 “위기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위기 대비·대응”을 각각 “위기관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감염병진단분석국)”을 “(진단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진단분석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진단분석국에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세균분석과·바이러스분석과·매개체분석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 및 신종병원체분석과를 두되,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을 “진단분석국에 진단관리총괄과·세균분석과·바이러스분석과·매개체분석과·고위험병원체분석과·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진단관리총괄과장”으로,

“세균분석과장·바이러스분석과장·매개체분석과장·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및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을 “세균분석과장·바이러스분석과장·매개체분석과장·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을 “진단관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 관리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
 5. 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6.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8.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11. 청 내 동물실험윤리,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2항 중 “예방접종관리과·의료감염관리과·항생제내성관리과·백신수급과·의료방사선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예방접종관리과장”을 “예방접종정책과·예방접종관리과·백신수급과·의료감염관리

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으로, “의료감염관리과장·항생제내성관리과장·백신수급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백신수급과장·의료감염관리과장·항생제내성관리과장”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접종관리과장”을 “예방접종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예방접종 및 신종감염병 등의 예방접종(이하 이 조에서 “예방접종”이라 한다.) 전략 및 중장기 접종계획 수립
2. 예방접종 사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안전성 연구 수행

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7호) 및 제6호(중전의 제8호) 중 “국가예방접종”을 각각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9호)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예방접종피해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을 “백신수급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
3. 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
4. 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
5. 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제12조제5항(중전의 제5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방사선과장”을 “항생제내성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생제 내성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
4.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5.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기술 지원
6.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7. 항생제 내성 조사·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8. 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
9. 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안전평가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예방접종사업 실시 및 운영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
3. 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4.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5. 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7.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제3항 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만성질환총괄과·만성질환예방과·희귀질환관리과·건강영양조사분석과·건강위해대응과·손상예방관리과 및 미래질병대비과”를 “만성질환총괄과·만성질환예방과·희귀질환관리과·건강영양조사분석과·손상예방정책과·기후·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로, “만성질환예방과장·희귀질환관리과장·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건강위해대응과장·손상예방관리과장 및 미래질병대비과장”을 “만성질환예방과장·희귀질환관리과장·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손상예방정책과장·기후·건강위해대비과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위해대응과장”을 “손상예방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상예방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예방정책의 기획·연구 및 총괄 조정
3.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평가 등
4.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
5.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운영
6.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7. 손상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손상조사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손상 원인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손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감시, 정보생산 및 홍보
13. 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관리
14. 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국내 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상예방관리과장”을 “기후·건강위해대비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후보건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2.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4. 기후보건에 대한 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5. 기후보건 관리에 필요한 지침 개발
6. 건강위해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7. 원인불명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 및 대응
8. 건강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연구
10. 흡연폐해 연구실 운영 및 질 관리
11. 기후·건강위해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2. 기후·건강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질병대비과장”을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 제·개정
2.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3. 환자 대상 의료방사선 장치·방어설비 관리
4.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5. 의료방사선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피폭관리센터 운영
7.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8.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의료방사선 사용의 정당성 가이드라인 및 검사별 최적화 선량(진단
참고수준) 개발
10.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 및 홍보
11. 청 내 방사선 안전 관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대외협력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1조 관련)

1. 질병관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나.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 관리역량개발담당관	9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 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다.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1명 (4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라.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 지원과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마.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 과	10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 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바.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 관리과	7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 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사.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 명, 7급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 응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자. 질병감시전략담당관	5명 (4급 1명, 6급 2명, 7급 1	2027년 3월 31일까지

	명, 연구관 1명)	
차.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 관리연구기획담당관	10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2027년 3월 31일까지
카.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 책과	3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 안전관리과	6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 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 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 이러스연구센터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 신개발지원센터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국립감염병연구소 만성바 이러스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 상연구과	7명 (연구관 4명, 연구사 3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국립감염병연구소 인수공 통감염연구과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 구개발총괄과	10명 (5급 1명, 7급 1명, 연구 관 4명, 연구사 4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 자원관리과	7명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임	7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상연구과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	------------------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① 위기대응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기대응분석관 밑에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위기분석담당관·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및 위기대응연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정보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2.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3.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 ③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 ----- 등 질병 데이터 ----- 2. 질병관리정책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 4. 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5. <u>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지원</u> 6. <u>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연구</u> 7. <u>위기대응역량개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u> 8. <u>감염병 위기 대비 예비방역 인력 및 협업인력 교육</u> 9. (생 략) ④ <u>위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보좌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1. <u>감염병 위기분석 계획 수립</u> 2. <u>국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u> 3. <u>국외 사건기반 감시체계 운영 및 분석</u> 4. <u>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u>	5. <u>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u> 6. <u>감염병 등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u> 7. <u>감염병 등 대응 기술 융합·개발</u> <삭 제> 8.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u>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u> 1. <u>감염병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분석기반 구축</u> 5. <u>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u> 7. <u>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및 관리</u> 9. <u>감염병 등 -----</u> 2. <u>역학 데이터 기반 분석·연구 및 근거 생산</u> 3. <u>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4. <u>역학조사 서식 표준화 및 개선</u>
---	--

5. 삭 제

6. 감염병 위험평가·분석 및
관련 연구·지원·협력에 관
한 사항

7. 국내외 감염병 위기평가 도
구 개발 및 보급

<신 설>

9.·10. 삭 제

<신 설>

12. 국외 감염병 위기분석 글로
벌 협력체계 구축

⑤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
을 보좌한다.

1.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2. 질병대응센터,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및 기술지도 지원

3. 역학조사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

4. 역학조사 정보 분석·관리
및 기준 설정

<신 설>

6.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12. ----- 등 위험-----
----- 개선

8. 감염병 데이터 개방·활용
조정 및 심의

11. 감염병 등 위험평가 및 관련
연구·지원 및 협력

10. -- 감염병 등 -----

⑤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

1.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4. 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감
염병 대응 역량 교육

5.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신 설>

5.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6.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신 설>

7. (생 략)

<신 설>

⑥ 위기대응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보좌한다.

1. 위기대응정책연구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의 수리(數理)적 연구 및 모델링

3. 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4. 삭제

5. 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

개발·보급 및 연구

7.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8.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감염병 ---

6.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질병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 지원

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10. (현행 제7호와 같음)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주관에 속하지 않는 감염병 등 역학조사

<삭 제>

6. 감염병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

7.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법 개발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부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두 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부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5. (생 략)

16.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및 감염병포털 구축·운영

17.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 (생 략)

② 감염병정책국에 감염병정책
총괄과 · 감염병관리과 · 인수공
통감염병관리과 · 결핵정책과
및 에이즈관리과를 두되, 감염
병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
관리과장 · 인수공통감염병관리
과장 · 결핵정책과장 및 에이즈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
한다.

③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6. 감염병 실태조사 총괄
7. 감염병 예방 · 관리 관련 관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염병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 인수공통감염
병관리과 · 결핵정책과-----
----- 감
염병정책과장-----

③ 감염병정책과장-----
-----.

1. -----

2. -----

3. -----
--
4. -----

6. -----
7. -----

계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
8. <u>질병대응센터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u>	<삭 제>
9.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9. -----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업에 관한 사항	10. -----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u>감염병위기대응국</u>) ① <u>감염병위기대응국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u>감염병위기관리국</u>) ① <u>감염병위기관리국장</u> -----
② <u>감염병위기대응국에 위기대응총괄과 · 검역정책과 · 의료대응지원과 · 비축물자관리과</u> 및 <u>신종감염병대응과</u> 를 두되, <u>위기대응총괄과</u> 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 · 의료대응지원과장 · 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	----- --. ② <u>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 · 검역정책과 · 의료대응지원과 · 비축물자관리과</u> --- ----- 위 <u>기관리총괄과</u> 장----- ----- ----- ----- ----- ----- -----

다.

③ 위기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총괄 및 종합 관리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3.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
4.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관련 교육·훈련 및 평가
7.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관련 국제협력
8.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교육·훈련 및 평가
9.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유관부처 협력 및 조정
10.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국제협력
11. 재난상황 관련 감염병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
12.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및 관리

-----.

③ 위기관리총괄과장-----

-----.

1. ----- 위기관리 -----

2. -----
3. ----- 위기관리 -----

4. ----- 위기관리 -----

5. -----

6. ----- 위기관리 -----

7. ----- 위기관리 -----

8. -----

9. -----

10. -----

11. -----

12. -----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 ⑦ (생 략)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감
염병진단분석국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
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감염병진단분석국에 감염병
진단관리총괄과 · 세균분석과 ·
바이러스분석과 · 매개체분석과
·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및 신종
병원체분석과를 두되, 감염병진
단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세균분
석과장 · 바이러스분석과장 · 매
개체분석과장 · 고위험병원체분
석과장 및 신종병원체분석과장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
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④ ~ ⑧ (생 략)

13.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
국장-----

② 진단분석국에 진단관리총괄
과 · 세균분석과 · 바이러스분석
과 · 매개체분석과 · 고위험병원
체분석과 · 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진
단관리총괄과장-----

----- 세균분
석과장 · 바이러스분석과장 · 매
개체분석과장 · 고위험병원체분
석과장 · 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장-----

③ 진단관리총괄과장-----

1. ~ 10.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생
략)
② 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

⑨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
해성 심사 및 평가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 관리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
가 및 승인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
술 개발 및 연구
5. 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
집 및 운영
6.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8.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
물안전에 관한 연구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
영 및 관리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
전 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11. 청 내 동물실험윤리,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예방접종정

관리과 · 의료감염관리과 · 항생제내성관리과 · 백신수급과 · 의료방사선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고, 의료감염관리과장 · 항생제내성관리과장 · 백신수급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
3. 국가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4. 국가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책과 · 예방접종관리과 · 백신수급과 · 의료감염관리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

-- 예방접종관리과장 · 백신수급과장 · 의료감염관리과장 · 항생제내성관리과장-----

----- 보한다.

③ 예방접종정책과장-----

1. 국가예방접종 및 신종감염병 등의 예방접종(이하 이 조에서 “예방접종”이라 한다.) 전략 및 중장기 접종계획 수립
2. 예방접종 사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내 · 외 동향 파악 및 안전

5. <u>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운영</u> 6. <u>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u> 7. <u>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역학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반 지원</u> 8. <u>국가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u> 9. <u>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u> 10. <u>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u> 11. (생략) ④ (생략) ⑤ <u>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u> 2. <u>항생제 내성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3. <u>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u>	<u>성 연구 수행</u> <삭 제> <삭 제> 5. <u>예방접종</u> ----- -- 6. <u>예방접종</u> ----- -- 7. <u>예방접종피해보상</u> ----- -- <삭 제> 8. (현행 제11호와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백신수급과장</u>----- -----. 1. <u>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u> 2. <u>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u> 3. <u>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u>
--	---

4. <u>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u>	4. <u>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u>
5. <u>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u>	5. <u>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u>
6. <u>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u>	<삭 제>
7. <u>항생제 내성 조사·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u>	<삭 제>
8. <u>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u>	<삭 제>
9. <u>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삭 제>
⑥ <u>백신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삭 제>
1. <u>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u>	
2. <u>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u>	
3. <u>국가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u>	
4. <u>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u>	
5. <u>국가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u>	
⑦ <u>의료방사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항생제내성관리과장</u> ----- -----.

1. 의료방사선 환자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2.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3. 환자 대상 의료용방사선 장치·방어설비의 관리
4.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5. 의료용방사선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의 운영
7.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8.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대상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표준유지
9. 측정기관 대상 방사선표준조사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용방사선 품질보증
10. 청 내 방사선 안전 관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기술 협력

1.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생제 내성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
4.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5.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6.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7. 항생제 내성 조사·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8. 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
9. 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⑧ <u>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u> 2. <u>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 관리</u> 3. <u>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u> 4. <u>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연구</u> 5. <u>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u> 6. <u>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u> 7. <u>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u> 8. <u>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u> 9. <u>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u> 10. <u>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u> 11. <u>청 내 동물실험윤리, 실험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3조(만성 질환관리국) ① · ②	④ <u>예방접종관리과장-----</u> -----. 1. <u>예방접종사업 실시 및 운영</u> 2. <u>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u> 3. <u>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u> 4. <u>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u> 5. <u>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u> 6. <u>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관리</u> 7. <u>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만성 질환관리국) ① · ②
--	--

(생 략)

③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총괄과 · 만성질환예방과 · 희귀질환관리과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건강위해대응과 · 손상예방관리과 및 미래질병대비과를 두되, 만성질환총괄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 희귀질환관리과장 ·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 건강위해대응과장 · 손상예방관리과장 및 미래질병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 ⑧ (생 략)

⑨ 건강위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현행과 같음)

③ -----

----- 제20호 -----

-----.

④ ----- 만성질환총괄과 · 만성질환예방과 · 희귀질환관리과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손상예방정책과 · 기후 · 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장 · 희귀질환관리과장 ·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 손상예방정책과장 · 기후 · 건강위해대비과장-----

-----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손상예방정책과장-----
-----.

1. 원인불명 건강위해 조사 및 대응

2. 건강위해요인(「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한 생체지표 모니터링 및 질병영향 조사

3.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위해요인에 관한 모니터링 및 조사

4. 신종 건강위해요인 모니터링 · 조사 및 대응

5. 중독질환(「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성질환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시 및 실태조사

6. 중독질환 예방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7. 중독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8.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질병 예방교육 및 홍보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 · 연구

<신 설>

1. 손상예방법령의 제 ·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예방정책의 기획 · 연구 및 총괄 조정

3.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 추진 및 성과관리 · 평가 등

4.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

5. 중앙 · 지역 손상관리센터 운영

6.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7. 손상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손상조사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손상예방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손상 원인 조사 계획 수립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손상예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손상(損傷) 예방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손상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3. 어린이·노인 등 손상 취약 계층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4. 손상질환 조사·감시·정보 생산 및 홍보

5. 손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손상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손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감시, 정보생산 및 홍보

13. 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관리

14. 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기후·건강위해대비장-----

1. 기후보건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2.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4. 기후보건에 대한 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5. 기후보건 관리에 필요한 지침 개발

6. 건강위해 관련 정책 및 계획

전문인력의 교육·양성 및 지원

7. 손상질환 예방수칙 개발 및 홍보

8. 심장정지 발생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감시, 정보생산 및 홍보

9. 심장정지 예방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관리

10. 손상 및 심장정지 관련 정보 공유 등 국내외 협력

<신 설>

<신 설>

⑪ 미래질병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3.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 대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4. 미래 질병 관리계획의 수립 등 미래 질병 대비 계획 총괄

5. 미래 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수립

7. 원인불명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 및 대응

8. 건강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 흡연 관련 폐해 예방 등을 위한 조사 및 실험·연구

10. 흡연폐해 연구실 운영 및 질 관리

11. 기후·건강위해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2. 기후·건강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⑪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 제·개정

2.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3. 환자 대상 의료방사선 장치·방어설비 관리

4.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5. 의료방사선 검사·측정기관

<u>매뉴얼 개발</u> <u>6. 미래 질병에 대한 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u> <u>7.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u> <u>8.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의 등록 및 지도·감독</u> <u>6.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피폭관리센터 운영</u> <u>7.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u> <u>8.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u> <u>9. 의료방사선 사용의 정당성 가이드라인 및 검사별 최적화 선량(진단참고수준) 개발</u> <u>10.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 및 홍보</u> <u>11. 청 내 방사선 안전 관리</u> <u>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대외협력</u>
--	--